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거창군결산검사위원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거창군수 귀하

2019년 4월 23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로부터 거창군 2018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거창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거창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거창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결산 검사 위원

대 표 위 원　　심 재 수

검 사 위 원　　송 재 명

검 사 위 원　　임 종 호

검 사 위 원　　이 종 문

목 차

Ⅰ. 결산검사 경과 ---------- 5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 6

1. 거창군 재정의 개황 ---------- 6

2. 세입·세출 결산 ---------- 8

3. 기금의 결산 ---------- 20

4. 재무제표의 결산 ---------- 22

5. 성과보고서 ---------- 25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7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30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 30

2. 성과보고서 분야 ---------- 41

3. 수범사례 ---------- 45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47

Ⅴ. 금고의 결산 ---------- 53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9. 4. 4. — 2019. 4. 23.(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심 재 수	재무제표 결산 및 검사 총괄	
위 원	송 재 명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및 개선 권고사항	
위 원	임 종 호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위 원	이 종 문	세입세출 및 금고결산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군 본청	4.4.~4.15.	재정상황 파악 및 결산내용 적정여부 검토	
군 의회	4.16.~4.17.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직속기관	4.18.~4.21.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사 업 소	4. 22.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 검토	
	4. 23.	결산검사 총괄정리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거창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회계	세 입	498,526,361	514,855,237	523,685,518	610,800,628	685,158,459
	세 출	367,822,087	383,476,529	369,344,239	398,098,997	415,062,719
	결산상잉여금	130,704,274	131,378,708	154,341,279	212,701,631	270,095,740
특별회계	세 입	64,293,672	67,563,402	66,373,684	73,151,701	75,352,296
	세 출	34,668,943	35,733,977	31,027,202	33,820,555	37,580,355
	결산상 잉여금	29,264,729	31,829,425	35,346,481	39,331,146	37,771,941
기금	수 입	13,749,971	14,027,841	14,188,402	14,149,637	13,743,529
	지 출	909,612	792,113	802,697	584,462	610,013
	결산상 잉여금	12,840,359	13,235,728	13,385,705	13,565,175	13,133,516
총 계	세입(수입)	576,570,004	596,446,480	604,247,604	698,101,966	774,254,284
	세출(지출)	403,400,642	420,002,619	401,174,138	432,504,014	453,253,087
	결산상 잉여금	173,169,362	176,443,861	203,073,465	265,597,952	321,001,197

○ 2018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것은 세수증가로 세입이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1,001,197천원으로 전년대비 20.8% 증가하였으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7,221,660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0	0	0	0	0	0
공채 b	0	0	0	0	0	0
차입금 c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d	0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e	0	0	0	0	0	0
채무총합계 f(a+e)	0	0	0	0	0	0

❍ 2014년도 이후로 채무계가 0원으로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 관리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지방채무 잔액 / 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채무 상환액 / 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 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 순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 재정자립도 : 6.03%

❍ 재정자주도 : 63.5%

거창군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 재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A-B)
합 계	775,980,747	774,254,284	453,253,087	321,001,197
일반회계	688,580,445	685,158,459	415,062,719	270,095,740
특별회계	73,919,268	75,352,296	37,580,354	37,771,942
공기업특별회계	42,609,819	44,393,794	26,755,327	17,638,467
상수도사업	16,996,595	17,605,268	9,108,519	8,496,749
하수도사업	25,613,224	26,788,526	17,646,808	9,141,718
기타특별회계	31,309,449	30,958,502	10,825,027	20,133,475
의료보호기금	818,294	816,155	772,793	43,36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2,031	42,080	41,999	81
주차장관리	645,501	648,150	184,636	463,514
산업단지조성사업	5,049,074	4,678,790	2,065,114	2,613,676
수질개선	6,094,216	6,093,121	5,185,340	907,781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95,700	596,749	562,487	34,262
농업발전기금	18,064,633	18,083,457	2,012,658	16,070,799
기 금	13,481,034	13,743,529	610,014	13,133,515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55,747,288 (883,700)**	**28,478,209 (172,231)**	**12,773,063 (6,371,220)**	**4,347,210**	**206,521,908**
일반회계		**53,321,967 (883,700)**	25,237,411 (172,231)	12,773,063 (6,371,220)	4,300,597	174,462,701
특별회계		2,425,321	3,240,798		46,613	32,059,207
공기업특별회계		1,775,236	2,587,440			13,275,790
상수도사업		400,000	773,417			7,323,332
하수도사업		1,375,236	1,814,023			5,952,458
기타특별회계		650,085	653,358		46,613	18,783,417
의료보호기금					30,056	13,3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1
주차장관리						463,513
산업단지조성사업		370,000	77,330		4,750	2,161,596
수질개선		276,039	551,569		11,807	68,366
댐주변지역지원사업		4,046	24,459			5,758
농업발전기금						16,070,798
기 금		-	-	-	-	-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은 774,254,284천원으로 예산현액 775,980,747천원보다 1,726,463천원이 부족하게 수납되었다.

전년대비 76,152,318천원(0.2%)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등(35.9%)이고, 총 774,254,284천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7.3%, 56.8%이다.

○ 세출은 세입결산액의 61.4%인 453,253,087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1,001,197천원이다.

○ 이 중 명시이월비 55,747,288천원, 사고이월비 28,478,209천원 및 계속비 12,773,063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4,347,210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6,521,908천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결산상잉여금(기금포함)은 321,001,197천원이다.

○ 세출은 전년대비 20,749,073천원(4.5%) 증가하였으며, 총 775,980,747천원의 예산현액 중 453,253,087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58%로 확인되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688,580,445	689,160,381	685,158,459	1,376,147	2,625,774
결산확인액	688,580,445	689,160,381	685,158,459	1,376,147	2,625,774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685,158,459천원은 예산액의 99.5%로서 이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에 기인한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2,625,774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무재산 150,966천원, 행방불명 57,319천원, 기타 245,417천원으로 발생되었는바,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다.

○ **불납결손처분**은 1,376,147천원이 발생되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으로 검사결과 적정하게 검토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85,158,459	685,158,459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18	688,580,445	689,160 ,381	685,158,459	1,376,147	100%	99.4%	0.19%
2017	576,360,055	613,215,014	610,800,628	646,233	99.6%	106.0%	0.11%
증감	112,220,390	75,945,367	74,357,831	729,914			

○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증가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법인소득,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세수증대이며,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646,233천원 보다 729,914천원이 증가한 1,376,147천원이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150,966천원, 행방불명 57,319천원, 기타 245,417천원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685,580,445**	**689,160,381**	**685,158,459**	**1,376,147**	**2,625,774**
지방세	소 계	24,660,792	28,291,732	26,925,021	147,469	1,219,241
	주민세	1,004,430	1,091,526	1,063,468	403	27,657
	재산세	5,346,060	5,587,187	5,472,136	3,470	109,581
	자동차세	8,867,950	10,168,297	9,678,423	1,671	488,202
	담배소비세	3,230,683	3,892,559	3,892,559	0	0
	지방소득세	5,815,719	6,527,288	6,285,196	1,488	240,603
	지난년도수입	395,950	1,026,875	533,239	140,437	353,198
세외 수입	소 계	16,582,907	21,817,939	19,292,839	1,228,678	1,296,422
	재산임대수입	112,796	187,319	183,371	0	3,948
	사용료 수입	1,478,299	1,417,603	1,392,135	0	25,468
	수수료 수입	1,277,000	1,702,664	1,692,894	0	9,770
	사업수입	1,200,000	1,287,203	1,286,607	0	596
	징수교부금수입	510,071	746,177	746,177	0	0
	이자수입	2,324,000	2,808,458	2,804,513	0	3,944
	재산매각수입	200,000	164,467	164,467	0	0
	부담금	152,633	7,390	7,390	0	0
	과징금및과태료	456,697	839,820	668,204	1,460	170,154
	기타수입	8,721,411	10,390,670	9,953,442	302,826	44,407
	지난연도 수입	150,000	2,266,168	303,639	924,392	1,038,135
지방교부세		244,397,000	248,153,260	248,153,260	0	0
조정교부금 등		21,198,508	21,198,508	21,198,508	0	0
보 조 금		163,856,895	155,950,407	155,950,407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7,884,343	213,748,535	213,638,424	0	110,111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9%인 26,925,021천원이,

세외수입은 2.8%인 19,292,839천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6.2%인 248,153,260천원, 조정 교부금 등은 3.1%인 21,198,508원, 보조금은 22.7%인 155,950,407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2%인 213,638,424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 산 액	613,495,684	688,580,445	415,062,719	98,759,591 (7,427,151)	171,547,231
결산확인액	613,495,684	688,580,445	415,062,719	98,759,591 (7,427,151)	171,547,231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613,495,684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5,084,76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88,580,445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04%인 259,561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세출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 해소기준에 맞추기 위한 경우 등이며,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2%에 해당하는 415,062,719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98,759,591천원(지금없는 이월액 **7,427,151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53,321,967천원(자금없는 이월액 883,700천원), 계속비 이월 12,773,063천원(자금없는 이월액 6,371,220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237,411천원(자금없는 이월액 172,231천원)이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군도 확포장과 대형 계속사업의 추진 지연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9%에 해당되는 171,547,231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이다.

○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은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총 예산액의 60.2%인 415,062,71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을 제외한 171,547,23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총 세입결산액 대비 30.1%인 206,521,908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15,062,719	415,062,719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지출액	2018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398,098,997	688,580,445	415,062,719	60.27	16,963,722	4.3
일반공공행정	32,535,687	41,233,396	33,923,504	82.27	1,387,817	4.3
공공질서및안전	6,266,547	7,348,716	6,494,453	88.37	227,906	3.6
교 육	4,403,238	5,052,793	4,665,856	92.34	262,618	6.0
문화및관광	15,911,068	20,436,608	15,099,028	73.88	△812,040	△5.1
환경보호	41,269,664	42,699,670	36,799,501	86.18	△4,470,163	△10.8
사회복지	90,673,765	98,877,279	93,607,410	94.67	2,933,645	3.2
보 건	6,304,543	9,669,247	7,861,443	81.30	1,556,900	24.7
농림해양수산	75,389,518	125,860,134	85,937,878	62.28	10,548,360	14.0
산업·중소기업	3,692,253	12,203,552	7,969,849	65.30	4,277,596	115.9
수송및교통	20,837,585	34,370,920	20,467,517	59.54	△370,068	△1.8
국토및지역개발	46,409,796	82,682,156	46,088,504	55.74	△321,292	△0.7
예비비		148,556,181				
기 타	54,405,334	59,589,793	56,147,776	94.22	1,742,442	3.2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93,607,410천원, 농림해양수산 85,937,87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6,088,504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산업·중소기업 115.9%이며, 환경보호는 전년대비 10.8%가 감소하였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73,919,269	75,930,917	75,352,296	12,696	565,925
공기업특별회계	42,609,819	44,454,511	44,393,795	12,696	48,020
상수도	16,996,594	17,643,659	17,605,269	7,315	31,075
하수도	25,613,225	26,810,852	26,788,526	5,381	16,945
기타특별회계	31,309,450	31,476,406	30,958,501		517,905
의료보호기금	818,294	816,155	816,1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031	42,080	42,080		
주차장관리	645,501	1,166,055	648,150		517,905
산업단지조성사업	5,049,074	4,678,790	4,678,790		
수질개선	6,094,216	6,093,121	6,093,121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95,701	596,749	596,749		
농업발전기금	18,064,633	18,083,456	18,083,456		
결산확인액	73,919,269	75,930,917	75,352,296	12,696	565,925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75,352,296천원은 예산현액의 101.9%로서 1,433,027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하수도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 등에 기인한 것이다.

○ **불납결손처분은 12,696**천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고, 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 되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5,352,296	75,352,296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65,531,718	73,919,268	37,580,355	5,666,120	30,626,179
공기업특별회계	35,131,351	42,609,819	26,755,328	4,362,676	11,491,814
상 수 도	15,802,736	16,996,594	9,108,520	1,173,417	6,714,657
하 수 도	19,328,615	25,613,225	17,646,808	3,189,259	4,777,157
기타특별회계	30,400,367	31,309,449	10,825,027	1,303,444	19,134,365
의료보호기금	818,294	818,294	772,793		15,4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031	42,031	41,999		32
주차장관리	645,501	645,501	184,636		460,865
산업단지조성사업	4,597,415	5,049,074	2,065,114	447,330	2,531,879
수질개선	5,716,237	6,094,216	5,185,340	827,609	69,461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16,256	595,700	562,487	28,505	4,709
농업발전기금	18,064,633	18,064,633	2,012,658		16,051,975
결산확인액	65,531,718	73,919,268	37,580,355	5,666,120	30,626,179
차 액	0	0	0	0	0

※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65,531,718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8,387,550천원으로 예산액은 73,919,268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과 이체는 없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0.8%에 해당하는 37,580,355천원이며 불용액이 41.4%인 30,626,179천원으로 과다한 것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적립금이 16,051,975천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기인하였으며,

➤이월액은 5,666,120천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주로 사업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7,580,355	37,580,355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 계		19,144,283 (6,371,220)		56,630,988 (883,700)		28,650,441 (172,231)	
일반회계		19,144,283 (6,371,220)		54,205,666 (883,700)		25,409,642 (172,231)	
일반공공행정				3,747,037		630,023	
공공질서및안전				260,000		95,544	
교 육				50,000			
문화및관광				3,091,513 (882,000)		1,040,298	
환경보호				3,412,050		1,483,378	
사회복지				234,571		1,134,498	
보 건						820,300	
농림해양수산		19,144,283 (6,371,220)		4,573,511 (1,700)		8,864,107 (172,231)	
산업.중소기업				60,000		2,931,533	
수송 및 교통				9,511,179		3,365,290	
국토 및 지역개발				29,265,805		4,976,218	
기 타						68,453	
기타특별회계				650,086		653,35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370,000		77,33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4,046		24,459	
수질개선				276,040		551,569	
농업발전기금							
공기업특별회계				1,775,236		2,587,441	
상수도사업				400,000		773,418	
하수도사업				1,375,236		1,814,023	

○ 검사결과 계속비는 19,144,283천원, 사고이월비는 28,650,441천원, 명시이월비는 56,630,988천원으로 확인되었다.

3. 기금의 결산

본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2,878,560	254,955	864,969	610,014	13,133,515
식품진흥기금	66,506	17,812	25,072	7,260	84,318
중소기업육성기금	6,560,226	△13,012	91,795	104,807	6,547,214
사회복지기금	3,376,363	112,309	161,199	48,890	3,488,672
재난관리기금	1,026,850	119,446	540,753	421,307	1,146,296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0,447	7	7,007	7,000	500,454
옥외광고발전기금	260,279	23,058	23,808	750	283,337
체육진흥기금	1,087,889	△4,565	15,335	20,000	1,083,224

○ 거창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써, 2018회계 연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의 조성액 12,878,560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864,969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610,014천원을 공제한 13,133,515천원이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1,109,376	12,840,358	13,235,728	13,385,705	12,878,560	3.8
당해연도 조성액	2,640,594	1,187,483	952,674	763,932	864,969	-24.3
당해연도 사용액	909,612	792,113	802,697	584,462	610,014	-9.5
당해연도말 조성액	12,840,358	13,235,728	13,385,705	13,565,175	13,133,515	0.6

○ 거창군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0.6%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14.8%p 낮기 때문이다.

< 기금운용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합 계		13,743,529	13,743,529	
사회복지기금		3,537,562	3,537,562	
식품진흥기금		91,578	91,578	
재난관리기금		1,567,603	1,567,603	
중소기업육성기금		6,652,021	6,652,021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7,454	507,454	
옥외광고발전기금		284,087	284,087	
체육진흥기금		1,103,224	1,103,224	

○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본년도 지출액은 13,743,529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다.

4. 재무제표의 결산

2018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284,204,581	2,160,618,104	123,586,477	5.7%
Ⅰ. 유 동 자 산	327,310,564	271,426,724	55,883,840	20.6%
Ⅱ. 투 자 자 산	13,111,229	4,576,826	8,534,403	186.4%
Ⅲ. 일반유형자산	96,980,057	90,198,953	6,781,104	67.5%
Ⅳ. 주민편의시설	308,261,333	304,820,576	3,440,757	1.1%
Ⅴ. 사회기반시설	1,537,649,994	1,488,851,617	48,798,377	3.3%
Ⅵ 기타비유동자산	891,404	743,408	147,996	16.6%
부 채	37,932,513	32,819,442	5,113,071	15.6%
Ⅰ. 유 동 부 채	11,942,025	6,578,570	5,363,455	81.5%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25,990,488	26,240,872	(250,384)	(0.9%)
순 자 산	2,246,272,068	2,127,798,662	118,473,405	5.6%
Ⅰ. 고정순자산	1,714,354,033	1,664,902,478	49,451,554	2.8%
Ⅱ. 특정순자산	13,515,288	14,089,617	(574,329)	(4.1%)
Ⅲ. 일반순자산	518,402,747	448,806,567	69,596,180	15.5%

○ 2018회계연도말 거창군의 자산은 2,284,204,581천원으로

전년도 2,160,618,104천원보다 123,586,477천원(5.7%)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유동성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유동자산 총액은 327,310,564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55,883,840천원(20.6%)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본 회계연도말 부채는 37,932,513천원으로 전년도 32,819,442천원보다 5,113,071천원(15.6%) 증가하였는데 유동부채가 11,942,025천원이고,

기타유동부채가 25,990,488천원으로 비 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 유동부채 총액은 11,942,025천원으로 전년대비 5,363,455천원(81%) 증가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의 총액은 25,990,488천원으로

전년대비 250,384천원(0.9%)이 감소하였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 - 나)	139,992,326	125,363,755	14,628,571	11.7%
가. 사업총원가	301,483,827	261,708,332	39,775,495	15.2%
나. 사업수익	161,491,501	136,344,577	25,146,924	18.4%
Ⅱ. 관리운영비	52,325,673	58,839,589	(6,513,916)	(11.1)%
Ⅲ. 비배분비용	14,365,100	12,440,680	1,924,420	15.5%
Ⅳ. 비배분수익	28,360,290	29,099,803	(739,513)	(2.5)%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78,322,809	167,544,221	10,778,588	6.7%
Ⅵ. 일반수익	304,283,407	306,536,837	(2,253,430)	(0.7)%
Ⅶ. 재정운영결과 (Ⅴ - Ⅵ)	(125,960,598)	(138,992,616)	(13,032,018)	(9.4)%

○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거창군의 사업 순원가는 139,992,326천원이고 관리운영비(52,325,673천원) 비배분비용(14,365,100천원) 및 비배분수익(28,630,290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78,322,809천원이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 178,322,809천원에서 일반수익 304,283,407천원을 차감한 본 회계연도 거창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125,960,598천원이다.

○ 재정운영 결과 (-)125,960,598천원으로 전년도의 (-)138,992,616천원보다 (-)13,032,018천원(9.4%)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익 중

정부 간 이전수익 7,817,188천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5. 성과보고서

○ 거창군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본 회계연도의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라는 비전과 **"군민공감 소통화합, 미래명품 교육도시, 희망나눔 복지증진, 부농실현 농촌경제, 품격있는 문화관광"**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관리 기능의 강화' 등의 거창군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20개→정책사업목표 71개→단위사업 19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결산액은 425,88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74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B)	미달성	달성률 (A/B)
계	**20**	**71**	**193**	**169**	**24**	**87.6**
의회사무과	1	1	2	2	0	
기획감사실	1	1	5	4	1	
민원봉사실	1	3	9	8	1	
행 정 과	1	2	8	8	0	
기업지원과	1	4	9	7	2	
재 무 과	1	2	9	8	1	

복지정책과	1	8	25	23	5	
안전총괄과	1	3	12	11	1	
경제교통과	1	6	12	10	2	
문화관광과	1	9	19	12	7	
산 림 과	1	2	7	7	0	
환 경 과	1	4	11	11	0	
건 설 과	1	5	11	10	1	
도시건축과	1	5	12	11	1	
농업기술센터	1	6	21	18	3	
보 건 소	1	1	3	3	0	
평생교육센터	1	5	8	6	2	
수도사업소	1	2	4	4	0	
체육시설사업소	1	1	4	4	0	
거창사건사업소	1	1	2	2	0	

○ 거창군의회에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행정과 등 8개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12개 부서에서는 미달성이 24건으로 87.6% 달성에 거치는 결과를 보였다.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성과지표의 임의변경,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지표들이 확인되고, 성과분석에도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실적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4,890,180	58,870	1,065,421	3,883,629
일 반 회 계	4,488,826	40,474	880,474	3,648,826
특 별 회 계	5,250	-	5,250	-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5,250	-	5,250	-
기 금	396,104	18,396	179,697	234,803
사회복지기금	396,104	18,396	179,697	234,803

○ 채권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883,629천원으로 전년도 말 잔액 4,890,180천원에서 당해 연도 58,870천원이 발생하고, 1,065,421천원이 소멸되었다.

○ 당해연도 소멸액 1,065,421천원 중 이행기간도래액은 184,947천원, 이행기한미도래액은 880,474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당해 연도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금액이다.

○ 또한 당해 연도 말 채권은 보증금채권과 융자금채권으로, 보증금채권은 회원권 133,000천원,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3,738,777천원 등이다.

(2) 채무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799,916,202	108,793,264	86,156,141	822,553,325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659,410,504	99,689,338	73,099,551	686,000,291
	공용재산	109,639,634	6,901,247	5,818,579	110,722,302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3,697,230	4,014	116,829	3,584,415
	소 계	772,747,368	106,594,599	79,034,959	800,307,008
일 반 재 산		27,168,834	2,198,665	7,121,182	22,246,317

○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2,637,123천원이 증가한 822,553,32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800,307,008천원, 일반재산이 22,246,317천원이며,

공유재산 중 토지는 26,261필지 44,110천㎡로 311,759,190천원, 건물은 599동 225천㎡, 150,415,023천원이다.

○ 주요 증가내용은 환지취득 69필지 18,572,861천원, 매입 812필지 23,572,791천원과 교환, 구획정리, 기부채납, 수용, 무상귀속 등이며,

감소내용은 이관 83필지 708,641천원, 매각 47필지 4,853,852천원, 구획정리 90필지 2,586,727천원 등이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　　량	893	77	49	919
금　　액	7,241,601	772,820	428,404	7,586,017

○ 검사결과 현재 물품은 전년도 보다 344,416천원이 증가한 7,586,017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버스 1대, 210,649천원, 화물트럭 4대 246,088천원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된 것이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세입세출 결산분야》

1.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강구

(현 황)

○ 우리군의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순세계잉여금은 164,893,539천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679,027,402천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 현황(예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총액 (A)	순세계잉여금 (B)	비 율 (A/B)
2016	계	496,609,192	82,031,678	17%
	일반회계	436,414,250	55,609,694	13%
	공기업특별회계	29,098,300	6,831,706	23%
	기타특별회계	31,096,642	19,590,278	63%
2017	계	570,863,187	108,857,878	22%
	일반회계	505,735,241	79,729,835	16%
	공기업특별회계	34,955,045	9,621,722	28%
	기타특별회계	30,172,901	19,506,321	65%
2018	계	679,027,402	164,893,539	24%
	일반회계	613,495,684	133,769,772	22%
	공기업특별회계	35,131,351	11,109,756	32%
	기타특별회계	30,400,367	20,014,011	66%

(문제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82,031,678천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496,609,192천원의 17%를 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08,857,878천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570,863,187천원의 22%를 차지하고, 2018년도에는 164,893,539천원으로세출예산 총액 679,027,402천원의 24%를 차지하는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바,

○ 이는 예산 편성시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산하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결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도 당초부터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하며,

○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제도를 도입하여,

여유자금을 적립해 놓았다가 세입 감소시나 대규모 사업추진 등에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바람.

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과다 편성 및 지출 부적정

(현 황)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특별한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적정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반회계 예산총액(A)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액(B) 〖비율:B/A〗	예비비사용 결정액(C) 〖비율:C/B〗	당해연도 집행액(D) 〖비율:D/B〗	이월액(E) 〖비율:E/B〗
2016	436,414,250	31,605,878 (7%)	-	-	-
2017	505,735,241	65,366,050 (13%)	1,318,467 (2%)	1,021,928 (1.6%)	-
2018	613,495,684	134,966,846 (22%)	896,600 (0.7%)	465,199 (0.3%)	359,366 (0.3%)
계	1,555,645,175	231,938,774 (15%)	2,215,067 (1%)	1,487,127 (0.6%)	359,366 (0.2%)

(문제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확보 및 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편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실제 집행한 금액은 아주 미미한 실정으로 재원을 사장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2016년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7%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확보해 놓고, 실제 집행한 금액은 없었고, 2017년의 경우에는 예산총액의 13%를 확보하여 확보된 예산의 1.6%를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총액의 22%를 확보한 후 실제 집행한 금액은 확보된 예비비의 0.3%정도만 집행하였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예비비의 내재적 지출제한을 예규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2018년 7, 8월 폭염에 다른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359,366천원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행정절차 이행, 업체선정 지연, 동절기 공사 등을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예비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함으로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달리 확보 기준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적정한 금액을 확보함으로서, 재원이 필요이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내재적 지출제한 기준에 맞게 사용 결정된 예비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3.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과소편성 운영 개선

(현 황)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2019	2018	2017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결산액(A)	174,462,700	133,769,772	79,729,835
순세계 잉여금 본예산 편성액(B)	72,900,000	37,900,000	40,000,000
결산액 대비 본예산 편성율 (B/A X 100)	42 %	28%	50%

(문제점)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실태를 보면,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9,729,835천원이 발생되었으나, 2017년도 본예산에는 50%인 40,000,000천원원만 편성하였고,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33,769,772천원이 발생되었으나, 2018년도 본예산에는 28%인 37,900,000천원만 편성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74,462,700천원이 발생되었으나, 2019년도 본예산에는 42%인 72,900,000천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는 편성 비율이 증가했다고 하겠지만 아직도 상당히 저조한 실정임.

○ 위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100%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가내시 통보에 의해 편성하는 관계로, 추후 확정교부 시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 등을 위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축소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부담금 예산이 7,443,281천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 따라서 그만큼 재정집행에 따른 지역개발 수혜가 늦어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므로 행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게 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편성 시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전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예산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으며,

○ 각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된 세출예산 심사를 강화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축소해서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혀 나가기 바람.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속명세서 정비

(현 황)

○ 2018년도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 결산상 잉여금은 8,496,749,097원으로, 2018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잔액(금고 보관액) 과는 일치되고 있으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상의 현금예금명세서에는 8,512,281,862원으로 되어 있어,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잔액과는 15,532,765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 차액의 발생요인은“상조회 및 기타”금액 9,760,197원과“수입지출외현금” 5,772,568원에 기인한 것이다.

(문제점)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현금예금명세서)에 상수도사업회계와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법인통장이라는 이유로 직원 상조회비를 잔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연도 총괄 결산서와 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은 상호 일치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 개인 사비 성격의 기금이 기관의 자산으로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법인명의로 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직원 상조회비 등은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법인통장 관리운영 및 부속명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5. 식품진흥기금 운용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말 조성잔액	예금잔액	차 액
식품진흥기금	66,508,370	84,318,020	92,168,020	7,850,000

○ 2018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중국음식점 주방 위생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4월 23일과 9월 21일 두 번에 걸쳐 도 식품진흥기금 7,85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업무 미숙을 이유로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가,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2018회계연도 결산 시에 예산잔액 불부합 상태로 처리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된 예산은 최대한 빨리 예산에 편성하여, 당초 목적하는 사업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혀 나가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겠음.

6. 사업현장 방문 점검 결과

(사업개요)

(1)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일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

○ 사 업 비 : 33,800백만원(국비 18,200　도비 4,680　군비 10,920)

○ 사업내용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 진입도로 개설

(2) 거창 창포원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7년 12월

○ 사 업 비 : 23,930백만원(국비6,850 도비1,355 군비11,164 기금4,561)

○ 사업내용 : 방문자 센터, 온실, 창포원, 수련원, 국화원 등

(3)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사업비 : 27,400백만원(국비 13,940　도비 3,910　군비 9,550)

○ 사업내용

- 치유의 숲 조성
- 자연 휴양림
- Y형 출렁다리
- 자생식물원 조성
- 등산로 조성사업
- 진입로 확장

(문제점)

○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2013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기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202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본사업의 핵심적인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스피트 익스트림 타운사업은 이미 타 자치단체들이 선점하고 있어, 완공시점에서는 기대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없지 않으며,

➤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 완료시에 이용률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거창 창포원의 경우

➤2017년 12월에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훌륭한 힐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황강 수질정화나 홍수량 조절 등 친수기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8년도에 창포원 운영과 시설유지 관리에 1,015,757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됨.

○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가조 온천, 고견사, 의상봉 등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변여건으로 인해 평소에도 관광객이 비교적 많이 오는 지역인데, 치유의 숲 과 자생식물원 조성은 물론이고 특히 타 지역에 없는 Y 형 출렁다리 설치 등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가 더욱더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권고사항)

○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은 기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시설들과의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기 전부터 미리 무주 리조트 및 구천동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방안과 TV,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객 유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 창포원은 가조온천, 수승대 명승지, 서울우유 등 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다목적 광장을 활용한 각종 축제. 행사 유치 및 공원내 순환레일바이크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은 기존의 진입도로를 정비하면서, 계곡을 따라 보행자를 위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가조면 소재지나 용당소마을 인근에 대형차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이나 휴일 등에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성과보고서 분야》

1. 성과목표 체계의 논리성, 연계성 미흡

(현 황)

○ 거창군의 성과목표 체계를 보면 「더 큰 도약, 군민행복시대」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공감 소통화합, 미래명품 교육도시'등 5개 군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개의 부서별 전략목표와 71개의 정책사업, 19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성과보고서"작성기준을 보면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토록 하여 임의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과보고서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과 함께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성과분석 결과 미달성,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사항 등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음.

○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결산서 필수 구성 서류로 지정된 3년차인데도 거창군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은 직원들의 관심과 교육 부족으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문제점)

○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전 부서에서는 측정산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임의 수정, 변경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고,

-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에 따른 측정산식은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 실적치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는 측정방법 설정

– 성과분석 시 미달성,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 원인분석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됨.

○ 특히 성과보고서에 명시된 20개의 부서별 전략목표를 확인한 결과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농업기술센터 항노화산업과, 농촌진흥과의 경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 또한 71개의 정책사업의 경우 민원봉사실, 기업지원과, 재무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건설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 명시된 과제가 서로 상이해 이로 인한 단위사업 간 연계성 미흡으로 당초 의도했던 전략목표 달성이 어려움이 예상됨.

(개선 및 권고사항)

○ 거창군의 미션→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 목표→단위사업(이행과제) 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의 상·하위 목표들이 논리적·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체계(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와 1:1로 일치시켜 연계성이 있도록 설정하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와 달성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작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충실한 성과분석, 목표달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권고함.

○ 아울러 성과보고서 총괄담당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와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부서장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2. 현안·역점사업, 신규·특수시책 성과계획서 미 작성

(현 황)

○ 거창군에서는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군정의 기본방향을 「더 큰 도약, 군민 행복시대」란 비전을 두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5개의 군정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본방향은 거창군의 비전과 군정목표에 기초한 부서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성과계획 목표와 예산체계로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가능한 지표 위주로 설정토록 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 성과계획 작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성과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거창군의회에 제출되고, 12월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확정 시행하고, 그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수정, 보완계획서를 수립토록 되어 있음.

(문제점)

○ 부서에서 설정한 1개의 전략목표는 그 부서에서 군정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며,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임.

○ 거창군의 “주요업무시행계획”체계를 보면 부서에서는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정책과제와 이행과제로 설정하고 그 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업으로 현안·역점사업과 신규·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어 있음.

○ 특히‘2018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경우 부서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법령이나 상부기관의 지침, 또는 자체계획에 의하여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업무 위주로 작성되어 있음.

○ 각 부서에서에서는 현안, 역점사업 80개, 신규, 특수시책 77개, 총 157개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당해 연도 군정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이나‘성과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아 그 추진내용이나 성과에 대해 확인 할 수 없었음.

○ 특히 거창군에서는 본예산을 비롯한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성과계획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성과보고서’내용이 계획서와 일치되지 않았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거창군에서는 예산을 수반한 단위사업에 대해‘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본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 결정된 본예산의 변경 결과는 물론, 추가경정예산 등 성과계획서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 보완하여 성과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 시 각 부서에서 계획한 현안, 역점사업, 신규, 특수시책을‘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권고함.

《수범사례》

1. 재정분석 우수군 선정

○ **재정분석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 **대상기간** : 2017년 1월 ~ 12월

○ **분석방법** :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지표 분석

○ **결　　과** : 종합점수 우수 지자체 선정 / 인센티브 50백만원 지원(특별교부세)

○ **우수지표**

연번	우수분야	지표값	동종단체평균	비고
1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0.84%	0.99%	낮을수록 우수
2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6.21%	3.10%	낮을수록 우수
3	통합재정수지비율	17.55%	7.89%	높을수록 우수
4	경상수지비율	58.49%	65.03%	낮을수록 우수

2.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군 선정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추진경과**

- 2011. 4.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2014. 12.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 근거 마련

- 2015. 7.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2015. 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운영실적

구분	검토건수	반영건수	예산반영 규모(천원)
계	260	128	34,906,203
인터넷, 설문조사	154	71	26,801,633
주 민 제 안	8	1	100,000
주민참여간담회	98	56	8,004,570

○ 운영평가 : 행정안전부 우수군 선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 재정인센티브 : 특별교부세 1억원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1)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이 30.3%에 달하고 있는 바,

○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이나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임.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및 중앙부처 방문 등 적절한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 향후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 될 것으로 사료됨.

2. 거창 예술인의 집 활용대책 강구

(1) 개선 및 권고사항

○ 거창 예술인의 집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훌륭한 시설인 만큼, 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타 용도로도 적절한 활용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각하는 등 조속한 기일 내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그동안 지역주민과 관내 문학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8년 8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 및 매각을 하기로 결정하고,

○ 2018년 10월 매각을 추진하던 중 예술인의 집 옥상에 설치된 개인설비 태양광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여 일단 보류된 상태에 있으나, 향후 태양광 보상 후 설비를 거창군으로 이전한 다음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3. 근대 의료박물관 운영 활성화

(1) 개선 및 권고사항

○ 근대 의료박물관은 의료사적으로나 사회사적 또는 건축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소중하며, 또한 희소가치도 크다 할 것임.

○ 따라서 각종 매체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서울우유 견학과 박물관 관람객을 연계하여 본 시설 방문자가 점차 증가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 아울러,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병동 일부 공간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 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는 물론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사회적 여건이나 주변 여건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의료인 직업 체험교실 운영과 거창도서관 문화강좌 대관 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매주 화요일에는 어린이 독서 연구회 모임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 거창 만령단 전시 코너 설치 및 자료 수집과 야외 정원정비, 전시 설명문 보완, 특별전시실 자료 보강 등 전시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 병원동 민간위탁 문제는 본 시설이 박물관인 동시에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어 타 용도로 활용 시 내부 리모델링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앞으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용도를 결정하기 바람.

4.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강화

(1) 개선 및 권고사항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계속 늘어나는 개체 수 조정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 전기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권역별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유해 야생동몰 개체 수 조정을 위해 포획보상금을 인상조치(멧돼지 1마리 : 50,000원 ⇒70,000원 /고라니 1마리 : 20,000원 ⇒30,000원) 하였고, 향후에도 추가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 피해 예방시설 설치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49% 정도 증액하고, 피해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한 권역별 피해예방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하는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5.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보완

(1) 개선 및 권고사항

○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수반한 단위사업에 대해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 본예산이 확정된 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변경부문에 대한 성과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 토록하고, 거창군의 미션 ⇒ 비전 ⇒ 전략목표 ⇒ 정책사업 목표 ⇒ 단위사업(이행과제)이 서로 연계성이 있도록, 업무계획을 토대로 예산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야 되므로, 2018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연계시켜 줄 것을 권고함.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201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상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주요업무 시행계획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부서 안내를 통해 주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단위사업과 지표 설정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6. 예산의 성과계획 수정계획 미 작성

(1)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계획에 의한 성과보고서는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현황과 목표 달성 과정,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에 의한 예산 변경 시 당연히 수정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서와 편성된 예산내역 및 성과보고서가 일치되도록 하여 주시고,

○ 아울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성과지표들은 성과보고서 지침에 의해 재설정 또는 재작성토록 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함.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2018년도의 경우 본예산 편성 후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성과계획서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수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성과보고서 내용이 계획서와 일치되지 않은 실정인바,

○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본예산 변경분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와 조직개편 내용 등을 반영해서 반드시 성과계획서를 수정, 보완토록하기 바람.

7. 성과지표 설정 개선

(1)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지표 설정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인 만큼 투입예산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 투입 및 과정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지표들을 결과 중심적지표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실적에 대한 검정은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권고함.

(2) 조치결과 및 검토의견

○ 성과지표 설정 시에는 투입예산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작성된 지표를 2차로 예산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 적극적인 업무수행이나 노력 없이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최대한 지양하고, 향후 성과목표를 실제로 달성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입 및 과정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지표들을 결과 중심적 지표로 수정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람.

Ⅴ. 금고의 결산

2018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단위: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잔액
합 계		760,510,755,655	452,643,075,350	307,867,680,305
일반회계		685,158,459,061	415,062,719,777	270,095,739,284
특별회계		75,352,296,594	37,580,355,573	37,771,941,021
공기업특별회계		44,393,794,990	26,755,328,105	17,638,466,885
	상수도사업	17,605,268,912	9,108,519,815	8,496,749,097
	하수도사업	26,788,526,078	17,646,808,290	9,141,717,788
기타특별회계		30,958,501,604	10,825,027,468	20,133,474,136
	의료보호기금	816,155,200	772,793,560	43,361,64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2,079,446	41,998,622	80,824
	주차장관리	648,149,830	184,636,134	463,513,696
	산업단지조성사업	4,678,790,341	2,065,114,550	2,613,675,791
	수질개선	6,093,121,160	5,185,339,782	907,781,378
	댐주변지역지원사업	596,749,390	562,487,130	34,262,260
	농업발전기금	18,083,456,237	2,012,657,690	16,070,798,547

○ 2019년 1월 20일 현재 각 회계별 금고 보관 금액을 확인한 결과 2018년도 잔액과 일치하였음

○ 금고의 지정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경쟁의 방법에 의거 3년 단위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하였으며,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회계별로 구분하여 2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